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동섭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5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12. 8.

발의자 : 이동섭 · 장정숙 · 노옹래
신용현 · 김종회 · 김관영
김해영 · 정인화 · 이원욱
장병완 · 이상돈 · 황주홍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 받기 전에 훼손·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·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,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.

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·도지정문화재로 지정·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·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에

등록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제3항).
- 나.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0조제4항).
- 다. 시·도지사는 시·도등록문화재를 등록하거나 말소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(안 제73조제1항).

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장의 제목 “시·도지정문화재”를 “시·도지정문화재 및 시·도등록문화재”로 한다.

제70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 단 중 “권고할”을 “권고하거나,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·보호할 것을 권고할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지정절차를”을 “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”는 것을 알 수 있도록 “지정”을 “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”는 것을 알 수 있도록 “지정 또는 등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관리”를 “시·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 관리”로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

제72조제1항 중 “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”를 “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”를 “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”로 한다.

제7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”를 “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”를 “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제1호와 제2호의”를 “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로 한다.

2.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

제74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”를 “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준용한다”를 “준용하며, 시·도등록문화재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, 제37조,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, 제46조제3호, 제

49조 및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를 준용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“지정” 앞에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, 판리, 보호·육성, 공개 등에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72조(경비부담) ① 제70조제1항
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·도
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
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
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“지정 또는 등록”-----

⑥ _____
_____ 시·
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,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 관리-

제72조(경비부담) ① 제70조제1항
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
지정 또는 등록된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가-----

<p>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</p> <p>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<u>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·관리·수리·활용</u> 또는 기록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-----.</p> <p>② ----- <u>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및 시·도등록문화재의-----</u>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
<p>제73조(보고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73조(보고 등) ① 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
<p>1. (생 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2.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거나 그 등록을 말소한 경우</u></p>
<p>2. <u>시·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</u></p>	<p><u>3.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의-----</u></p> <p>-----.</p>
<p>3. <u>시·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, 유실,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</u></p>	<p><u>4. 시·도지정문화재, 문화재자료 또는 시·도등록문화재의-----</u></p> <p>-----.</p>

